

#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151
----------	-------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수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 □ 주요내용

- 습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개장, 휴장, 관람, 입장시간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관람료 징수가 필요할 경우 징수할 수 있음(안 제7조)
-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과 변상책임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관리 위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6조)
- 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 제정조례안 : 붙임1

## □ 조문대비표(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 붙임2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4. 30. ~ 2019. 5. 13. (13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5

## < 불임 1 >

#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갈대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조성한 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습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시설”이란 습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의 뜻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관리 및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습지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습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보관, 정보제공 및 전시
3. 습지의 시설 및 조경 운영관리
4. 습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습지 홍보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능)** 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서식지 보전 및 수질개선
2. 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환경교육
3. 시민휴식 공간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습지의 개장일은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습지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추석(음력 8월 15일)
5. 습지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시간)** ① 습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습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시장이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유모차, 휠체어 이외의 자전거, 킥보드 등 기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6.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습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무허가 영업행위
  4. 낚시, 수영, 어업, 식물채취, 동물포획, 철새 알 품기 간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5.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주정차하는 행위
  6. 초경량비행장치를 습지 상공에 띄우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습지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습지 해설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 및 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습지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가족실(수유실 포함), 휠체어, 유모차 등 대여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품 판매 등)** ① 시장은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습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

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 의 종류 및 가격을 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갈대습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수처리 관련 전문가, 환경교육 전문가, 공원시설 및 조경 관련 전문가 등 갈대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홍보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1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이 규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환경생태팀장 최미연 (행정 2615)

< 불임 2 >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조문 대비표

#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51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24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갈대습지의 높은 생태적 가치 반영을 위하여 기존 환경교육을 생태·환경교육으로 수정함.
- 안산갈대습지의 생태보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절기의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절기의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수정함.
- 자문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

## 주요골자

- “환경교육”을 “생태·환경교육”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안산갈대습지의 운영시간 수정함.(안 제6조)
-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함.(제16조)

##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환경교육” 을 “생태·환경교육” 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9시” 를 “10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시부터 오후 5시” 를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교육” 을 각각 “생태·환경교육” 으로 한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4조(기능) 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조(기능)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u>환경교육</u>	2. ----- <u>생태 · 환경교육</u>
3. (생 략)	3. (원안과 같음)
제6조(관람시간) ① 습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6조(관람시간) ① -----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는 오전 <u>9시</u>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는 오전 <u>10시</u>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에는 오전 <u>9시</u> 부터 오후 <u>5시</u> 까지로 한다.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에는 오전 <u>10시</u> 부터 오후 <u>4시30분</u> 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11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습지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u>환경교육</u>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 ----- ----- ----- ----- <u>생태 · 환경교육</u> -----.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u>환경교육</u>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 ----- ----- ----- ----- <u>생태 · 환경교육</u> -----.
③ (생 략)	③ (원안과 같음)
<u>&lt;신 설&gt;</u>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원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18조 (원안 제17조와 같음)